

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시 보

제2533호

2026년 7월 16일 (목)

차 례

고시 · 공고

- 파주시 고시 제2026-293호 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 1
- 파주시 고시 제2026-295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 2
- 파주시 고시 제2026-296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 완료 고시 ... 5
- 파주시 고시 제2026-299호 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고시 ... 6
- 파주시 고시 제2026-300호 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 7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파 주 시

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

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3, 같은 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(농지성토)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“사고지”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등재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7월 16일

파 주 시 장

1. 고시취지: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변경(절·성토 등)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읍내리 735에 대하여 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4에 따라 “사고지(불법성토)로 등재함.

2. 사고지 조서(지역·지구 등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등)

구분	명칭	위치	지목	면적(m ²)	비고
1	사고지 (불법성토)	군내면 읍내리 735	전	9,511	농지불법성토

3. 고시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: 고시일로부터

4.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: 원상복구 완료시

5. 사고지 도면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“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치 법규에 따라 지역·지구 등의 범위가 지정되는 경우로 지형도면자료 생략

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
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(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) 제2항 및 3 (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)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6일

파 주 시 장

1. 지정대상 :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

연번	도 로 명	위치(구간)		도로폭 (m)	연장 (m)
		시 점	종 점		
1	교육길	연풍리 424-7	연풍리 409-5	8	90

2. 조성계획 : 붙임 참조

3.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도로건설과(☎031-940-467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

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

□ 사업개요 및 현황

- 사업위치 : 교육길(연장 90m, 폭 8.0m)
- 사업기간 : 2026. 7. ~ 2026. 11. (5개월)
- 사업내용

사 업 명	사업내용
연풍초교 보행자우선도로	- 도로 재포장 : 1,691㎡ - 미끄럼방지포장 : 687㎡ - 차선도색 : 118㎡ - 우수받이 설치 9개소

- 사 업 비 : 141백만원
- 사업대상지 현황
 - 연풍초교 후문 교육길은 초등 학생들의 보행량이 많은 도로이나, 보도 설치를 위한 최소 유효 폭^{2.0m(불가피한 경우 1.5m)} 확보가 불가하고, 인접 건축물 및 지장물(옹벽, 담장 등) 저촉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어려운 실정임.

□ 개선목표 및 범위

- (경제성) 보행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
- (만족도) 안전성·편리성·쾌적성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
- (안전성) 차량 감속 주행, 보행자 우선의 도로 환경 조성으로 보행안전 확보
- (편리성) 차량 운전자 인식 변화에 따른 보행편의 확보
- (쾌적성) 가로미관 향상, 차량 소음 감소

□ 조성계획

- 설계내용
 -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, 보행친화형 디자인 포장(스텐실)
 - 보행자우선도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, 교통정온화시설 설치
- 설계도면 : 별첨

□ 위 치 도



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 완료 고시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3항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7월 16일

파 주 시 장 (직인)

1. 소하천등 정비의 개요

- 가. 소하천등 정비의 명칭 및 시행 위치
 - 정비명칭 : 문발천(소하천) 정비사업
 - 시행위치 :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214번지 일원
- 나. 착공 및 준공년월일
 - 착공일 : 2024.5. / 준공일 : 2026.7.

2. 소하천등 정비 시행자의 명칭

- 시행자의 명칭 :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

3. 소하천 등 정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(㎡)		소유자	비 고
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 명	
1	파주시 동패동	2214	천	17,436.6	17,436.6	한국토지주택공사	
2	파주시 동패동	2214-1	천	467.5	467.5	한국토지주택공사	
3	파주시 문발동	757	천	8,576.5	2,606.2	한국토지주택공사	
소계				26,480.6	20,510.3		

4.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

- 파주시청 하천관리과 비치(031-940-2991)

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고시

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-5088호(2009.6.12.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파주시 고시 제2013-44호(2013.4.26.), 제2017-87호(2017.5.2.), 제2018-107호(2018.5.11.), 제2020-240호(2020.9.3.), 제2026-86호(2026.2.27.)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되고, 파주시 고시 제2018-158호(2018.7.24.), 파주시 고시 제2025-420호(2025.8.20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되고, 파주시 고시 제2020-115호(2020.4.22.), 파주시 고시 제2023-372호(2023.10.27.), 파주시 고시 제2025-506호(2025.10.15.), 파주시 고시 제2026-186(2026.4.28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된 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제3항,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완공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(부분준공)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6일

파 주 시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명 칭 : 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-15번지 일원
나. 면 적 : 35,804.55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성 명 : 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황유성)
나.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금정12길 19, 2층(금촌동)

4. 부분 준공인가일 : 2026. 7. 15.

5. 준공(부분준공)인가의 내역

- 가. 건축시설(공동주택 및 복리시설)

건 축 개 요	대지면적	35,804.55㎡(전체) 24,783.62㎡(사업부지)	주용도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	
	건축면적 (건폐율)	6,154.9408㎡ (24.8347%)	층 수	지하3층 ~ 지상29층	
	동수/세대수/연면적 (용적률)	7개동 / 1055세대 / 112,084.6487㎡ (281.73%)		주차대수	1,162대

- 나. 정비기반시설 : 제외

※ 완공된 건축물(공동주택 등)에 대한 부분 준공인가이며, 정비기반시설(도로, 공원, 주차장 등)은 추후 공사 완료 후 별도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예정임.

6. 의제처리 사항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·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·준공인가·사용검사·사용승인사항 등. 끝.

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

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3, 같은 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(농지성토)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“사고지”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등재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7월 16일

파 주 시 장

1. 고시취지: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변경(절·성토 등)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산리 13-1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4에 따라 “사고지(불법성토)로 등재함.

2. 사고지 조서(지역·지구 등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등)

구분	명칭	위치	지목	면적(㎡)	비고
1	사고지 (불법성토)	문산읍 장산리 13-1	답	117	농지불법성토
		문산읍 장산리 13-3		4,365	
문산읍 장산리 45-1		116			
문산읍 장산리 45-2		1,501			
문산읍 장산리 45-3		1,174			
문산읍 장산리 45-4		1,078			
2					

3. 고시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: 고시일로부터

4.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: 원상복구 완료시

5. 사고지 도면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“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치 법규에 따라 지역·지구 등의 범위가 지정되는 경우로 지형도면자료 생략